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1억 7천 6백만 원
- 징수결정액 : 21억 7천 8백만 원
- 실제수납액 : 21억 7천 8백만 원
- 결손처분액 : 해당 없음.
- 미 수 납 액 : 해당 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전년도 100%)임.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2,176,447	2,177,592	2,177,592	0	0	0	100.1	100
세외수입	2,770	3,913	3,913	0	0	0	141.3	100
경상적세외수입	70	0	0	0	0	0	0	100
이자수입	70	0	0	0	0	0	0	100
기타이자수입	70	0	0	0	0	0	0	100
임시적세외수입	2,700	3,913	3,913	0	0	0	144.9	100
보조금 반환수입	2,700	2,623	2,623	0	0	0	97.1	10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700	2,623	2,623	0	0	0	97.1	100
기타수입	0	1,290	1,290	0	0	0	0	100
그외수입	0	1,290	1,290	0	0	0	0	100
지방교부세	350,000	350,000	350,000	0	0	0	100	1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지방교부세	350,000	350,000	350,000	0	0	0	100	100
지방교부세	350,000	350,000	350,000	0	0	0	100	100
특별교부세	350,000	350,000	350,000	0	0	0	100	100
보조금	892,963	892,963	892,963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892,963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892,963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	892,963	892,963	892,963	0	0	0	100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0,714	930,715	930,715	0	0	0	100	100
보전수입등	930,714	930,714	930,714	0	0	0	100	100
전년도 이월금	762,607	762,608	762,608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62,607	762,608	762,608	0	0	0	100	100
보조금등 반환금	168,107	168,107	168,107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68,107	168,107	168,107	0	0	0	100	1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241억 1천 9백만원

○ 예산증감 : 13억 4천 8백만원 증액

○ 예산현액 : 254억 6천 7백만원

○ 지출액 : 234억 9천 4백만원

○ 이월액 : 3억 9천 5백만원

○ 집행잔액 : 15억 5천 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1%(전년도 1.4%)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8천 2백만원,

낙찰차액 7억 3천 5백만원, 지출잔액 4억 3천 8백만원임.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총 예산	25,467,019	23,494,269	395,020	22,280	1,555,450	6.1%
사업예산계	24,182,158	22,261,829	395,020	22,280	1,503,029	6.2%
자치경찰총괄과	2,644,111	2,578,311	0	21,011	44,789	1.7%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책 기반마련	2,644,111	2,578,311	0	21,011	44,789	1.7%
자치경찰 제도 정비	1,440,963	1,415,196	0	21,011	4,756	0.3%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67,200	164,649	0	0	2,552	1.5%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자원 강화	71,100	70,801	0	0	299	0.4%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 기구 운영	902,963	881,947	0	21,011	5	0%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299,700	297,800	0	0	1,900	0.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전년도 이월)	314,220	274,747	0	0	39,473	12.6%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314,220	274,747	0	0	39,473	12.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888,928	888,368	0	0	560	0.1%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결합 추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250,000	250,000	0	0	0	0%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56,928	156,900	0	0	28	0%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482,000	481,468	0	0	532	0.1%
자 치 경 찰 협 력 과	16,514,195	15,626,392	88,156	1,269	798,378	4.8%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6,514,195	15,626,392	88,156	1,269	798,378	4.8%
시-경찰 협력 강화	71,900	65,372	0	1,269	5,259	7.3%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51,900	46,641	0	0	5,259	10.1%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 기구 운영	20,000	18,731	0	1,269	0	0%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16,442,295	15,561,019	88,156	0	793,120	4.8%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전환사업)	107,736	107,397	0	0	339	0.3%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 사업)	913,360	793,204	88,156	0	32,000	3.5%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전환사업)	31,970	31,970	0	0	0	0%
방법용 CCTV운영(전환사업)	82,091	70,721	0	0	11,370	13.9%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전환사업)	598,400	598,287	0	0	113	0%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전환사업)	78,915	78,915	0	0	0	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전환사업)	138,398	138,398	0	0	0	0%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전환사업)	85,440	85,440	0	0	0	0%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81,677	681,242	0	0	435	0.1%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514,490	514,490	0	0	0	0%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전환사업)	31,620	31,620	0	0	0	0%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8,620	58,620	0	0	0	0%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	6,230	6,229	0	0	1	0%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4,340	4,340	0	0	0	0%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 사업)	6,801,221	6,801,221	0	0	0	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24,670	223,735	0	0	935	0.4%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100,083	100,082	0	0	1	0%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전환사업)	47,726	47,726	0	0	0	0%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525,974	524,146	0	0	1,828	0.3%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1,768,000	1,353,527	0	0	414,473	23.4%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93,253	1,483,787	0	0	109,466	6.9%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385,964	1,200,043	0	0	185,921	13.4%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8,200	28,200	0	0	0	0%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9,017	159,017	0	0	0	0%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19,500	18,500	0	0	1,000	5.1%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105,400	104,925	0	0	475	0.5%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 연계사업	100,000	90,257	0	0	9,743	9.7%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250,000	224,978	0	0	25,022	10%
자 치 경 찰 지 원 과	5,023,852	4,057,127	306,864	0	659,861	13.1%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5,023,852	4,057,127	306,864	0	659,861	13.1%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79,200	2,044,285	0	0	34,915	1.7%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06,500	1,973,559	0	0	32,941	1.6%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72,700	70,726	0	0	1,974	2.7%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2,944,652	2,012,842	306,864	0	624,946	21.2%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47,500	47,500	0	0	0	0%
기타 교통활동 지원	45,500	45,500	0	0	0	0%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320,878	320,878	0	0	0	0%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60,360	56,161	0	0	4,199	7.0%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203,098	203,098	0	0	0	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276,310	275,905	0	0	405	0.1%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635,776	232,292	0	0	403,484	63.5%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1,215,230	708,510	306,864	0	199,856	16.4%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140,000	122,999	0	0	17,001	12.1%
일 반 예 산 계	1,284,861	1,232,439	0	0	52,422	4.1%
기본경비	245,138	192,719	0	0	52,419	21.4%
재무활동	1,039,723	1,039,720	0	0	3	0%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에서

1억 5천만원

- 한강경찰대 이촌계류장 설치비 확보를 위해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사업에서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시설비)으로

4천만원

-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신축 관련 건축기획용역비 확보를 위해 「한강 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사업에서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시설비)으로

4천 5백만원

총 3건, 2억 3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여성안심물품 지원'을 위해

총 1건, 5억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9천 9백 8십 9만원을 지출하고, 11만원을 불용처리(불용률 0.1%)했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월비 : 2건, 3억 9천 5백만원

- 명시이월: 해당없음
- 사고이월

시설물 제작에 필요한 관급자재 수급 지연의 사유로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사업비 사고이월 8천 8백만원

선박 설계 승인 지연 및 안정적인 공사 수행 등의 사유로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사업비 사고이월 3억 7백만원

총 2건, 3억 9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3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1개 사업에
8억 9천 3백만원

전년도 이월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1개 사업에
2천만원

경찰청으로부터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등 3개 사업에

4억 1천 4백만원

총 2개 부처 5개 사업에 13억 2천 7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3억 5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2백만원을 불용 처리(반납 예정)했음.

〈 서울경찰청 및 산하 31개 경찰서 2023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 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22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3 년 도 말 보 유 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185		수량	86	61	-	-	-	61	-	-	-	-	-	147
						금액	66	77	-	-	-	77	-	-	-	-	-	143
1	4010 1701	냉방기	대	2	10	수량	-	2	-	-	-	2	-	-	-	-	-	2
						금액	-	4	-	-	-	4	-	-	-	-	-	-
2	4010 1787	냉난 방기	대	4	9	수량	1	3	-	-	-	3	-	-	-	-	-	4
						금액	3	6	-	-	-	6	-	-	-	-	-	-
3	4228 1508	고압증 기멸균 기또는 소독기	대	2	11	수량	1	-	-	-	-	-	-	-	-	-	-	1
						금액	0.3	-	-	-	-	-	-	-	-	-	-	-
4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8	6	수량	8	5	-	-	-	5	-	-	-	-	-	13
						금액	12	9	-	-	-	9	-	-	-	-	-	-
5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개	0	8	수량	3	1	-	-	-	1	-	-	-	-	-	4
						금액	4	3	-	-	-	3	-	-	-	-	-	-
6	4512 1516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	대	167	9	수량	73	49	-	-	-	49	-	-	-	-	-	122
						금액	47	53	-	-	-	53	-	-	-	-	-	-
7	5216 1545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대	2	6	수량	-	1	-	-	-	1	-	-	-	-	-	1
						금액	-	2	-	-	-	2	-	-	-	-	-	-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1억 7천 6백만원이나 21억 7천 8백만원 징수 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0.0%임.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2,176,447	2,177,592	2,177,592	0	0	0	100.1	100
세외수입	2,770	3,913	3,913	0	0	0	141.3	100
경상적세외수입	70	0	0	0	0	0	0	100
이자수입	70	0	0	0	0	0	0	100
기타이자수입	70	0	0	0	0	0	0	100
임시적세외수입	2,700	3,913	3,913	0	0	0	144.9	100
보조금 반환수입	2,700	2,623	2,623	0	0	0	97.1	10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700	2,623	2,623	0	0	0	97.1	100
기타수입	0	1,290	1,290	0	0	0	0	100
그외수입	0	1,290	1,290	0	0	0	0	100
지방교부세	350,000	350,000	350,000	0	0	0	100	100
지방교부세	350,000	350,000	350,000	0	0	0	100	100
지방교부세	350,000	350,000	350,000	0	0	0	100	100
특별교부세	350,000	350,000	350,000	0	0	0	100	100
보조금	892,963	892,963	892,963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892,963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892,963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	892,963	892,963	892,963	0	0	0	100	1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0,714	930,715	930,715	0	0	0	100	100
보전수입등	930,714	930,714	930,714	0	0	0	100	100
전년도 이월금	762,607	762,608	762,608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62,607	762,608	762,608	0	0	0	100	100
보조금등 반환금	168,107	168,107	168,107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68,107	168,107	168,107	0	0	0	100	1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지체보조금반환수입’은 예산현액(27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97.1%(262만원), ‘그외수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었으나 수납액 129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그외수입’은 2022회계연도 발생한 수당 반납, 보조사업 이자수입 등 (129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지급분으로 다음연도인 2023년 세외 수입으로 처리한 것임.1)

〈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및 처리사유
2023-01-04	269,230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분 징수 4건 / 자치경찰총괄과
2023-03-14	43,270	보조사업 이자수입 징수 3건 / 자치경찰총괄과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 | | |
|--------|----------|--------|
| 1) 과징금 | 2) 이행강제금 | 3) 부담금 |
| 4) 변상금 | 5) 과태료 | 6) 환수금 |
| | | 7) 범칙금 |

나. 그 밖의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 1) 재산매각 수입 | 2)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 3) 보조금 반환수입 |
| 4) 기타수입 | 5) 지난연도수입 | |

2023-01-17	400,920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납 등 3건 / 자치경찰협력과
2023-01-17	142,330	초과근무수당 반납 2건 / 자치경찰협력과
2023-01-17	276,120	인사이동자 대민활동비 반납 등 3건 / 자치경찰협력과
2023-03-09	36,460	자치경찰협력과
2023-12-13	47,080	휴차료 1건 / 자치경찰협력과

-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동행치안을 구현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므로,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당 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반납 등 수당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54억 6천 7백만원 중 234억 9천 4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6.1%(불용액 15억 5천5백만원)로 전년(1.4%)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3.4%)보다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이라 함) 및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회계연도는 제2차 재정분권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으로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접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총 예산	25,467,019	23,494,269	395,020	22,280	1,555,450	6.1%
사업예산계	24,182,158	22,261,829	395,020	22,280	1,503,029	6.2%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2,644,111	2,578,311	0	21,011	44,789	1.7%
자치경찰 제도 정비	1,440,963	1,415,196	0	21,011	4,756	0.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전년도 이월)	314,220	274,747	0	0	39,473	12.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888,928	888,368	0	0	560	0.1%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6,514,195	15,626,392	88,156	1,269	798,378	4.8%
시-경찰 협력 강화	71,900	65,372	0	1,269	5,259	7.3%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16,442,295	15,561,019	88,156	0	793,120	4.8%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5,023,852	4,057,127	306,864	0	659,861	13.1%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79,200	2,044,285	0	0	34,915	1.7%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2,944,652	2,012,842	306,864	0	624,946	21.2%
일반예산계	1,284,861	1,232,439	0	0	52,422	4.1%
기본경비	245,138	192,719	0	0	52,419	21.4%
재무활동	1,039,723	1,039,720	0	0	3	0%

가. 예산의 변경사용

- 자치경찰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없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 2억 3천 5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자율방범 연합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0	△ 150,000	0	2023. 3. 24.	100,000	100,000	0 (0%)
	민간행사 사업보조	0	0	150,000		150,000	150,000	0 (0%)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 품취득비	1,300,000	△ 40,000	0	2023. 8. 17.	1,260,000	추가 변경사용으로 5번째 행 후술	
지역치안생활 안전수요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시설비	100,000	0	40,000		140,000	122,998	17,001 (87.9%)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 품취득비	1,260,000	△ 44,770	0	2023. 11. 14.	1,215,230	708,510	199,855 (16.4%) ※의견도입금액 306,864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 찰대)(전환사업)	시설비	101,000	0	44,770		145,770	145,77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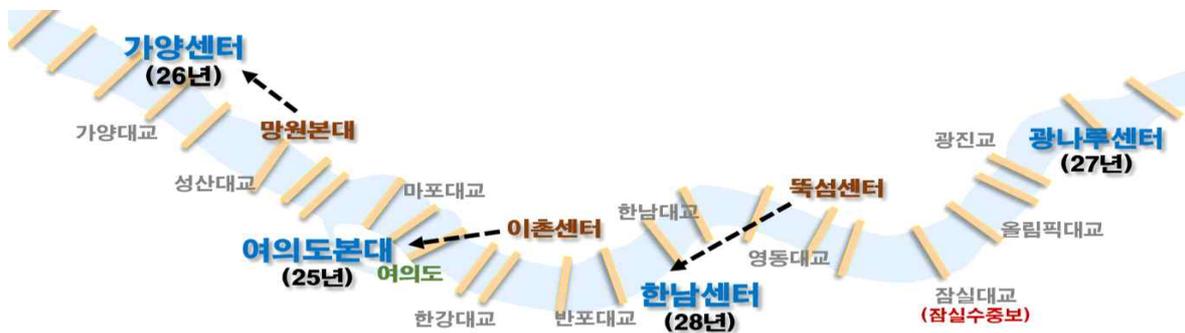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에서 1차로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만원을 한강순찰대 이촌계류장 설치를 위하여 “지역치안생활 안전수요대응 주민 생활 안정 시책” 사업의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 ‘계류장’은 순찰정을 정박시키는 장소로, 한강경찰대는 타 기관 계류장 사용으로 인명 구조 등 긴급수난 지원을 위해 동시계류가 상시 요구되나 他 선박 동시 정박으로 운영상 어려움 발생, 계류공간 부족으로 선박간 사고위험 증가, 장비창고 부족, 인양 작업 어려움이 있다고 함. 이에 계류장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3억원)를 요청하였으나 1억원만 교부되었고, 계류장 설치비는 1억 4만원으로 4천만원이 부족하여 노후순찰정 교체 예산에서 변경사용함(자치경찰위원회,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변경계획”, 2023.5. 참조)

- 2차로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 5백만원을 한강순찰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센터신축을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위하여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사업의 ‘시설비’로 변경사용하였음.

※ 한강상 시민 최후선 치안체계 확립을 위하여 4개 센터의 합리적 위치변경 및 시설 개선은 ‘한강순찰대 연차별 개선계획’에 따라 여의도본대 센터신축 부지 선정, 한강유역 환경청을 통한 하천점용허가, 건축물과 기반시설 조성 등 사전전략 수행을 위해 건축 기획용역이 필요하여 노후순찰정 교체 예산에서 변경사용함(자치경찰위원회, “한강 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변경계획”, 2023.11. 참조).

【한강경찰대 센터 연차별 개선계획】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2월 주요업무보고』, 11면 재인용.

- 이촌계류장 신설과 한강순찰대 연차별 개선계획을 위한 건축기획용역 사업은 당초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자치경찰 위원회는 이를 위해 변경사용을 통하여 신규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 이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과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예산집행 형태라고 할 수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 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편의적인 이월 등 지양 필요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2건, 3억 9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고 있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의 예외적 사안인 이월에 대한 점검과 예산조정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㉔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㉕	다음연도이월액 ^㉖		집행잔액 ㉗-㉘-㉙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시설비	600,000	568,317	480,161	0	88,156	31,683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215,230	1,015,374	708,510	0	306,864	199,856

▶ 이월사유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서대문구에서 시행중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공사 관급자재 연내 납품 불가 등으로 인해 연내 공사 준공 불가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 순찰정 건조기간 부족으로 납기일 내 순찰정 납품 불가로 계약연장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사업은 2022년에는 ‘사무관리비(4천 7백5십만원)’를 사업대상지 변경 및 자치구의 안전검사 선행에 따른 환경 조성시기 지연으로, 2023년에는 ‘시설비(8천8백만원)’를 자치구에서 공사 관급자재 연내 납품 불가 등으로 인해 연내 공사 준공 불가에 따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

- 먼저,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유는 “연내 공사 준공 불가(‘24.2월 착공 예정, 공사 관급자재 연내 납품 불가 등)”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 연도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추진 하여 연도 말(‘23.12.)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이월’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사업은 주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자치구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하여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업이 선정된 자치구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 등으로 사업 기간 지연, 연례적인 이월과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강순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은 중형 순찰정 2정 건조 마감이 당초 2023년 12월이었으나 “건조기간 부족으로 납기일 내 순찰정 납품 불가로 계약연장”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 동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1천 5백만원에서 7억 8백만원을 집행하고, 3억 7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도, 2억원(불용률 16.4%)의 예산을 불용 처리 하였는바, 이는 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 및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2회계연도에서 2023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의 집행을 살펴 보면,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사업의 ‘시설비(3천9백만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130만원)’,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의 ‘시설비(1천만원)’는 이월하고도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고 있음.

〈 명시 및 사고이월(2022회계연도→2023회계연도)된 예산집행 현황 등 〉

(단위 : 천원, %)

연도	사업명	통계목	이월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 2023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시설비	명시이월	293,700	254,227	39,473	86.6%
		시설비	사고이월	20,520	20,520	0	100%
		소계		314,220	274,747	39,473	87.4%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공공운영비	명시이월	20,000	18,731	1,269	93.6%

연도	사업명	통계목	이월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100,000	90,257	9,743	90.3%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47,500	47,500	0	100%
	기타 교통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45,500	45,500	0	100%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사고이월	320,878	320,878	0	100%
합계				848,098	363,215	50,485	94.0%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 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사고이월은 단지 해당연도 편성 예산의 미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시기 지연을 초래하고, 그 지연의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며, 사고이월과 불용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집행에 있어 연례적 이월과 이월 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 2023회계연도는 1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회 추경에서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4천1백만원)” 감액 1건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3억8천2백만원)” 증액 1건 등이 있었음.

〈 2023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총 계	454,581	1,835,230	1,380,649	
세출	국고보조금 반환	0	1,039,723	1,039,723	○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 협력지원과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 반환금(0원→1,040백만원)
	기본경비	201,171	159,731	△41,440	○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과 ○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감소정 ◦ 국내여비(78백만원→37백만원)
	관광경찰대 운영	253,410	635,776	382,366	○ 편성부서 : 자치경찰지원과 ○ 코로나19 완화 후 적극적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노후 관광경찰센터 부스 신규 제작비용 등 신규 편성 ◦ 자산및물품취득비(6백만원→389백만원)

-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중 ‘국내여비’는 2023년 제1회(5월)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통해 4천 1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29.0% 규모인 1천 1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과목		당초 예산액	1회 추경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자치경찰 총괄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78,400	△41,440	36,960	26,246	-	10,714 (29.0%)	- 국내여비 집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외출장 실적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사무국장 원탁회의 화상회의 전환 등의 사유로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수행직원을 최소화하여 집행액 발생
관광경찰대 운영 (전환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6,410	382,366	388,776	6,410	382,366	382,366 (98.4%)	- 관광경찰대 개방센터(명동, 이태원) 2곳 시설개선 목적으로 추가경정 예산 382,36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의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전액 집행잔액 발생

- 자치경찰위원회의 ‘국내여비’는 2022년 제2차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용(62.0%, 2천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 제1차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용(29.0%, 1천1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당초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기본경비”의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과년도 집행실태 등을 분석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편성해야 하고, ‘국내여비’의 경우 단가×인원수라는 기계적 적용보다는 담당 부서의 업무성격상 출장의 필요성, 빈도 등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²⁾ 자치경찰위원회도 실제 소요 예산액 추정을 위해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의 ‘국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39,200	5,155	34,045 (86.8%)	43,400 (제2회 추경 △35,000천원)	16,504	26,896 (62.0%)	36,960 (제1회 추경 △41,440천)	26,246	10,714 (29.0%)

-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은 관광지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한 치안 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중대재해 위험성 있는 노후건물 개선을 위한 개방형 센터(명동, 이태원) 정비로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자산및 물품취득비’ 3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하였음.
- 이는 경찰청 조직개편(’23. 10.)에 따라 치안 현장에 경찰관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관광경찰대를 전면 폐지예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질의하였고(10.16.), 사업 중단요청 회신완료(10.26.)에 따라 관광경찰대 센터 개선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고,
-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광경찰대는 ‘3천만 관광시대 서울 미래비전(’23.9.)’에 부응하여 서울시 관광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관광경찰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폐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인력배치에 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청은 관광경찰대를 폐지하였음.³⁾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4년 5월 29일, 92면 재인용.

- **관광경찰대는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권한 없는 경찰청이 폐지한 것은 서울시의 자치경찰권(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에 대한 침해이며,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자치경찰사무 담당조직을 변경·폐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배제하여 자치경찰제도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2023년 10월 일부개정·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12호, 일부개정 2023.10.17., 시행 2023.10.30.)는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였고, 서울 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로 개편하였음.

3)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훈령 제373호, 2024.1.19.)에서 **관광경찰대는 삭제**되었고, **신설된 기동순찰대에 범죄우려지역, 관광지 등 주요 장소에서의 범죄 예방순찰 및 대응활동을 분장**하고 있음.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정은 자치경찰제 실시 취지를 무색케 하였고, ‘자치경찰차장’ 폐지로 1개 조직(범죄예방대응부)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 조직이 혼재되어 구분이 불명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실무협의 및 임용권 행사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 「경찰법」 제35조제1항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경찰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이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안 건의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서 “외국 관광객들의 바가지·강매 등 문제를 해결해 오던 서울 관광경찰대 울 초 폐지되면서 경찰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강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외국인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와 신속한 필요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보다 재정투자가 필요한 긴급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등,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한국경제, “명동에 화장품 사러 갔다가 ‘날벼락’ ... “나라망신” 시끌”, 2024년 5월 21일자 참조.
(최종방문 2024년 6월 3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12630i>)

라.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54억 6천 7백만원 중 234억 9천 4백만원 집행하여, 불용률은 6.1%(불용액 15억 5천5백만원)로, 전년(1.4%, 불용액 3억3백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불용률은 4.3%(일반회계 3.4%, 특별회계 6.7%)임.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총 예산	25,467,019	23,494,269	395,020	22,280	1,555,450	6.1%
사업예산계	24,182,158	22,261,829	395,020	22,280	1,503,029	6.2%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2,644,111	2,578,311	0	21,011	44,789	1.7%
자치경찰 제도 정비	1,440,963	1,415,196	0	21,011	4,756	0.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전년도 이월)	314,220	274,747	0	0	39,473	12.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888,928	888,368	0	0	560	0.1%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6,514,195	15,626,392	88,156	1,269	798,378	4.8%
시-경찰 협력 강화	71,900	65,372	0	1,269	5,259	7.3%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16,442,295	15,561,019	88,156	0	793,120	4.8%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5,023,852	4,057,127	306,864	0	659,861	13.1%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79,200	2,044,285	0	0	34,915	1.7%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2,944,652	2,012,842	306,864	0	624,946	21.2%
일반예산계	1,284,861	1,232,439	0	0	52,422	4.1%
기본경비	245,138	192,719	0	0	52,419	21.4%
재무활동	1,039,723	1,039,720	0	0	3	0%

- 자치경찰위원회의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20% 이상 발생사업 현황(통계목별)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천 3백만원(불용률 35.5%),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1천 4백만원(불용률 23.4%),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사업 중 ‘공공운영비’ 1억 8천 6백만원(불용률 13.4%),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사업 중 ‘공공운영비’ 2천만원(불용률 20.6%),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8천 2백만원(불용률 98.4%) 등을 불용 처리하고 있음.
-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은 예산 불용 처리사유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 심사시 삭감조정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률 발생 현황 및 불용 사유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기 본 경 비 (자치경찰총괄과)	사무 관리비	91,971	59,288	32,683	35.5%	국고보조금(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선 집행에 따라 기본경비 미집행
	국내여비	36,960	26,246	10,714	29.0%	국내여비 집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외출장 실적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사무국장 원탁회의의 전환 등의 사유로 예상치를 밑돌았 으며, 수행 직원을 최소화하여 집행잔액 발생
지 역 사 회 진 단 및 범 죄 예 방 활 동 (전 환 사 업)	자산및물 품취득비	100	1	99	99.5%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우편발송이 아닌 현장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예산 미사용
무 인 단 속 장 비 구 매 (전 환 사 업)	자산및물 품취득비	1,768,000	1,353,527	414,473	23.4%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무 인 단 속 장 비 운 영 (전 환 사 업)	공공 운영비	1,593,253	1,483,787	109,466	6.9%	내용연수 경과(7년) 또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으로 오작동이 우려되어 연말에 불용 예정인 장비들을 운영중단하여 예산 절감
스 쿨 존 무 인 단 속 장 비 운 영 (전 환 사 업)	공공 운영비	1,385,964	1,200,043	185,921	13.4%	자치구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는 설치 후 도로 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되어야 실제 단속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권 이관 절차(자치구→서울경찰청) 시기도 늦어져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근무환경개선	사무 관리비	1,500	500	1,000	66.7%	자치경찰 후생복지 제도 운영 2년 차, 설명회·회의 등 개최수요 감소로 수당 미지급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 (전환 사업)	공공 운영비	960	555	405	42.2%	공용차량 세차비 등 사용 후 집행잔액
관 광 경 찰 대 운 영 (전환 사업)	공공 운영비	99,000	78,582	20,418	20.6%	관광경찰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용 후 집행잔액
	자산및물 품취득비	388,776	6,410	382,366	98.4%	관광경찰대 개방형센터(명동, 이태원) 2곳 시설 개선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 382,366천원 편성 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의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전액 집행잔액 발생
한 강 경 찰 대 노 후 순 찰 정 교 체	자산및물 품취득비	1,215,230	708,510 (사고이월 306,864)	199,856	16.4%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1)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사무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총 30개의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2022회계연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어, 서울시가 직접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현액 241억 8천 2백만원 중 73.5%(177억 8천 2백만원)는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 예산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로 배정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전환사업 예산현액 177억 8천 2백만원 중 165억 2천 8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 6.6%(불용액 11억6천6백만원)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환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예산 중 “전환사업” 예산 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총 예산	25,467,019	23,494,269	395,020	22,280	1,555,450	6.1%
사업예산계	24,182,158	22,261,829	395,020	22,280	1,503,029	6.2%
전환사업예산계	17,781,867	16,528,182	88,156	0	1,165,530	6.6%

〈 자치경찰위원회의 “전환사업” 예산 결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전환사업예산계	17,781,867	16,528,182	88,156	0	1,165,530	6.6%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56,928	156,900	0	0	28	0%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482,000	481,468	0	0	532	0.1%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전환사업)	107,736	107,397	0	0	339	0.3%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913,360	793,204	88,156	0	32,000	3.5%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전환사업)	31,970	31,970	0	0	0	0%
방법용 CCTV운영(전환사업)	82,091	70,721	0	0	11,370	13.9%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전환사업)	598,400	598,287	0	0	113	0%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전환사업)	78,915	78,915	0	0	0	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전환사업)	138,398	138,398	0	0	0	0%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전환사업)	85,440	85,440	0	0	0	0%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81,677	681,242	0	0	435	0.1%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514,490	514,490	0	0	0	0%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전환사업)	31,620	31,620	0	0	0	0%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8,620	58,620	0	0	0	0%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전환사업)	6,230	6,229	0	0	1	0%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4,340	4,340	0	0	0	0%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801,221	6,801,221	0	0	0	0%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24,670	223,735	0	0	935	0.4%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100,083	100,082	0	0	1	0%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전환사업)	47,726	47,726	0	0	0	0%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525,974	524,146	0	0	1,828	0.3%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1,768,000	1,353,527	0	0	414,473	23.4%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93,253	1,483,787	0	0	109,466	6.9%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385,964	1,200,043	0	0	185,921	13.4%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8,200	28,200	0	0	0	0%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9,017	159,017	0	0	0	0%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60,360	56,161	0	0	4,199	7.0%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 활동(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203,098	203,098	0	0	0	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 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276,310	275,905	0	0	405	0.1%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635,776	232,292	0	0	403,484	63.5%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다발 구간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 사망사고 감소 추진을 위한 것으로, 17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3억 5천 4백만원 집행하고, 23.4%(불용액 4억1천4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2022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221,000	813,252	320,878	86,870	7.1%
2023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768,000	1,353,527	0	414,473	23.4%

〈 무인교통단속장비 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계약방식	입찰자	낙찰자	예산금액	계약금액	계약방식	입찰자	낙찰자	예산금액	계약금액
2단계 경쟁입찰		에스티엔씨	1,221,000	827,110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1,868,000	1,061,607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386,600	320,878	2단계 경쟁입찰		토펬스	818,000	410,000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11월 15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함에 따른 과도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이 아닌 주먹구구식 자의적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을 반증하는바, 무리한 예산 확보로 인해 당해연도에 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의 회선사용료, 보험료 및 정기검사비 등의 공공요금 지출과 단속예고표지판 설치, 불용처리 및 장비이전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13억 8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억원을 집행하고, 13.4%(불용액 1억8천6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참조).
-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설치 후 2년간 설치 관서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지만 2년 후터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의 주체인 서울경찰청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게 됨.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2022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979,213	704,879	0	274,334	28.0%
2023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1,385,964	1,200,043	0	185,921	13.4%

▶ 2023회계연도 불용사유

- 자치구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는 설치 후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되어야 실제 단속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로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권 이관 절차(자치구→서울경찰청) 시기도 늦어져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 서울시 자치구에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를 20년도 486대, 21년도에 497대를 설치하였으며, 이관 운영시점을 고려하여 20년도 설치장비는 100%, 21년도 설치장비는 25% 수준으로 운영비 편성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23년 12월 기준) 〉

(단위 : 대)

구분	총계	고정식				이동식
		소계	과속	다기능 (과속·신호)	구간	
일반	704	685	121	508	56	19
스쿨존	1,334	1,334	393	939	2	0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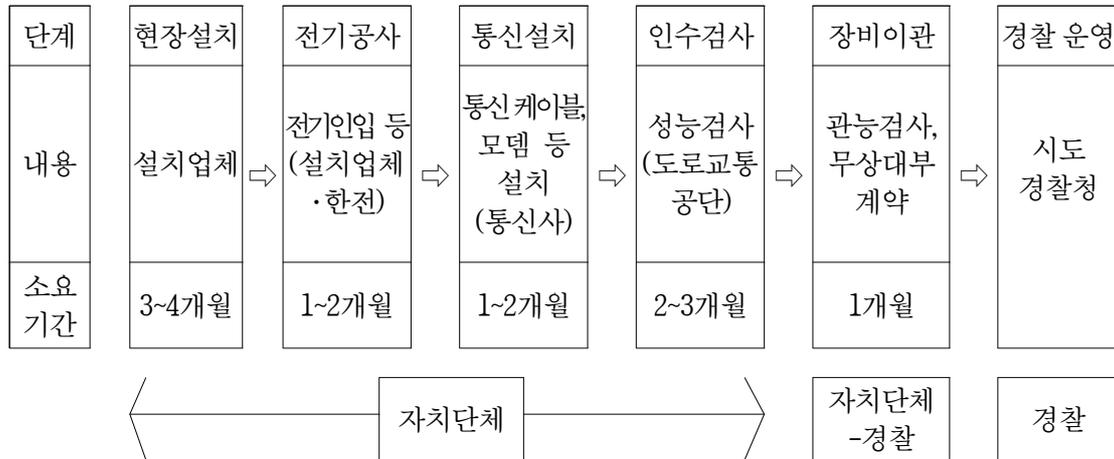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24년 4월말 기준) 〉

연 번	자 치 구	어린이보호구역(개)	연 번	자 치 구	어린이보호구역(개)
1	종로구	46	14	마포구	51
2	중구	42	15	양천구	87
3	용산구	37	16	강서구	88
4	성동구	50	17	구로구	58
5	광진구	66	18	금천구	44
6	동대문구	74	19	영등포구	67
7	중랑구	41	20	동작구	62
8	성북구	99	21	관악구	69
9	강북구	39	22	서초구	92
10	도봉구	64	23	강남구	109
11	노원구	116	24	송파구	98
12	은평구	67	25	강동구	85
13	서대문구	39	총 계		1,690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후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 지연에 따라 운영·관리권 이관 절차(자치구 → 서울경찰청)도 늦어져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음.

〈 무인단속장비 설치(지자체)·운영(경찰청) 흐름도 〉



※ 출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부처별Ⅲ), 2023.8., 349면에서 재인용.

※ 무인단속장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공사 이후, 전기·통신 연결 공사와 도로교통 공단의 인수검사(성능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청에 이관되는 절차를 거침.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된 「도로교통법」 제12조 (법률 제16830호, 일부개정·시행 2019..12.24.)(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로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 지연으로 설치 공사 완료 이후에도 인수검사 등의 절차 지연으로 경찰의 무인단속장비 운영도 늦어지고 있음.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실질적인 운영 기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불용 처리하여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이는 건정재정 운영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 기간의 정확한 기간 계산 등에 따라 실제 운영가능한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 편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물론,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고,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 경비로서,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는 1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1천 6백만원 집행하고, 27.2%(불용액 4천3백만원)를 불용 처리하고 있음.

〈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159,731	116,297	43,434	27.2%
사무관리비	91,971	59,288	32,683	35.5%
국내여비	36,960	26,246	10,714	29.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600	26,563	37	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0%

※ 불용사유

- ▶ 사무관리비 : 국고보조금(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선 집행에 따라 기본경비 미집행
- ▶ 국내여비 : 국내여비 집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외출장 실적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사무국장 원탁회의의 화상회의 전환 등의 사유로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수행직원을 최소화하여 집행잔액 발생

- 이 중에서 ‘국내여비’는 2023년 제1차 추경에서 감액(7,840만원 → 3,696만원) 조정하였음에도 과도한 불용(29.0%, 1천1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는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35.5%(불용액 3천3백만원)를 불용 처리하고 있으며, 불용사유는 국고보조금(시·도자치경찰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선 집행에 따라 기본경비 미집행이라고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2023년 5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⁵⁾ 통해 ‘사무관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미집행으로 3천 3백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음.
-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자치경찰 위원회는 법령에 부합한 예산운용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은 노후 순찰정을 신규로 구매하여 사고위험 예방, 신속한 신고출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당초 제출된 예산안은 소형 순찰정 신규 구매를 위한 3억원이었으나, 한강경찰대는 소형선은 가용

5)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878), 제안일 2023년 5월 30일.

공간이 좁고, 전복위험이 높아 예비선으로 부적합하므로 중형선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회 심의에서 중형선 2대와 소형선 1대를 신규 구매할 수 있도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3년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안)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순찰정 구입 = 300,000천원
		- 순찰정(소형) 신규 구매 300,000,000원 * 1정 = 300,000천원
	증감사유	
	○ 노후된 순찰정 신규구매를 위한 증액	

- 그러나, 순찰정 가격상승으로 중형 2대와 소형 1대 구매시에는 소요 예산 (13억원 → 15억9천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중형 2대(중형 1정당 6억3천만원, 총 12억6천만원)를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구매 잔액은 한강순찰대 이촌계류장 설치를 위하여 변경사용(4천만원) 하였고, 순찰정 구매 예산 낙찰차액 일부(4천5백만원)를 여의도본대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위하여 변경사용하였음.

〈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예산의 변경사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	△ 40,000	0	2023. 8. 17.	1,260,000	-	
지역치안생활 안전수요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시설비	100,000	0	40,000		140,000	122,998 17,001 (87.9%)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000	△ 44,770	0	2023. 11. 14.	1,215,230	708,510 199,855 (16.4%) ※안도비 306,864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시설비	101,000	0	44,770		145,770	145,770 0 (0%)	

- 또한, 한강순찰대 중형 2대 순찰정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제한 경쟁(2단계 경쟁입찰)을 통한 중형 2대 순찰정 건조 계약금액은 9억 9천 7백만원으로 체결('23.8.24.)하여 낙찰차액 2억원이 발생하여 이를 불용 처리하였음.

〈 한강순찰대 순찰정 계약 현황 〉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한강순찰대 순찰정 구입	주식회사 로○○○○○○○○○○	996,600,000	'23.12.30.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215,230	1,015,374	708,510	0	306,864	199,856

▶ 이월사유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 순찰정 건조기간 부족으로 납기일 내 순찰정 납품 불가로 계약연장

- 당초 의회는 “한강경찰대 순찰정 노후 교체” 사업 예산을 중형 2대와 소형 1대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의결하였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과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결국 과도한 낙찰차액(2억원)을 발생시켜 이를 불용 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무시한 예산 집행행태라고 할 것인바,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적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부서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50억 5천 5백만원이며, 집행액은 49억 7천 5백만원으로 98.4%를 집행(집행잔액 8천만원, 불용률 1.6%)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초 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 또는 초과 집행,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한 항목이 있었음.
-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장비수리비(176만원)’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자료 인쇄(260만원)’,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자문회의(100만원)’ 등은 예산 편성액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세부산출기초)’ 중 예산현액 집행 20% 미만 내역 〉

(단위 : 원, %)

부서 및 세부사업	세부 산출기초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행정장비수리비	1,764,000	0	1,764,000	0.00
	업무보고 및 기본계획 인쇄 등	12,000,000	1,000,000	11,000,000	8.33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2,600,000	0	2,600,000	0.00
자치경찰협력과 (교통장비 운영비)	발광형 LED 조끼	6,000,000	924,000	5,076,000	15.40
자치경찰협력과 (기본경비)	협의회 회의자료 등 인쇄	500,000	0	500,000	0.00
	도서구입비	200,000	0	200,000	0.00
	행정장비수리비	504,000	0	504,000	0.00
	소규모수선비	90,000	11,000	79,000	12.22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자문회의	1,000,000	0	1,000,000	0.00

자치경찰지원과 (관광경찰대 운영)	원어민 인터뷰	700,000	0	700,000	0.00
자치경찰지원과 (기본경비)	이호조 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	650,000	0	650,000	0.00

- 또한, 부서별·사업별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주민 참여 치안정책 만족도 및 신규 정책 수요조사’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학술대회 등 신규정책 수요 급증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으나, 8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6천 9백만원(449.6%)을 초과 지출하고, 자치경찰 협력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종이류’는 37만원을 편성하여 228만원을 집행하여 191만원(611.3%)를 초과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한 예산 집행이라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세부산출기초)’ 중 140% 이상 초과 집행현황 〉

(단위 : 원, %)

부서	세부사업	세부 산출기초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자치경찰총괄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주민참여 치안정책 만족도 및 신규 정책 수요조사	20,000,000	89,922,020	-69,922,020	449.61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반려견 순찰대 모집 인쇄물	9,500,000	18,000,000	-8,500,000
	순찰대 발대식 및 캠페인		16,350,000	32,000,000	-15,650,000	195.72
	운영비(사무용품 및 우편배송등)		9,550,000	17,550,000	-8,000,000	183.77
	기본경비	기본 사무용종이류	497,000	934,600	-437,600	188.05
		소규모수선비	120,000	286,000	-166,000	238.33
자치경찰협력과	기타 교통활동 지원	교통안전시설심의회 등 운영	450,000	624,180	-174,180	138.71
		기본경비	기타 소모품 유지 보수 등	500,000	950,430	-450,430
	주요업무추진급량비		17,280,000	25,319,700	-8,039,700	146.53
	기본사무용종이류		373,000	2,280,500	-1,907,500	611.39

자치경찰 지원과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현장 교육 운영 경비	4,000,000	10,979,000	-6,979,000	274.48
	기본경비	소규모수선비	70,000	100,000	-30,000	142.86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자의적 예산집행은 지양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당시 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운용 기준에 부합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관리 철저 필요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사업의 ‘민간 행사사업보조’는⁶⁾ 일회성 행사 사업 보조로 교부액은 1억 5천만원이며, ‘민간 경상사업보조’는⁷⁾ 총 4건으로 교부액은 73억 6천 6백만원으로, 총 교부액 75억 1천 6백만원 중 74억 4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1천 2백만원(1.5%)을 불용 처리하여 반납하였음.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울지부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372,000	369,902	2,098	0	0	2,098

- 6)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함.
- 7)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함.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서울녹색 어머니연합회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96,530	96,530	0	0	0	0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민강경상사업보조)	100,000	92,003	7,997	0	0	7,997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148,500	1,500	0	0	1,500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797,309	6,696,810	100,498	0	0	100,498
합 계		7,515,839	7,403,745	112,093	0	0	112,093

○ 이 중 대한노인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68억원을 교부하여 67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불용률 1.5%)을 반납하였음.

※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경찰, 교사 등 은퇴한 전문 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실종, 학대 등)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서울특별시경찰청 예규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동안전지킴이”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속)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장이 위촉하며, 지구대(팀)장 또는 파출소장 소속 하에 활동한다.

- 민간보조사업 예산도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반납액은 2년 연속 예산편성 대비 과도하게 불용 처리하고 있는바(’22년 1억4천4백만원, ’23년 1억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2022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428,067	6,283,435	144,632	0	0	144,632
2023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797,309	6,696,810	100,498	0	0	100,498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다음으로,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사업은 자율방법연합회 역량 강화 및 활동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역 방범순찰 활동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은 자부담계좌(보조금전용통장)을 이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서울시 자율방법연합회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2023년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를 살펴보면, 보텀-e 시스템⁸⁾ 이용 혼선으로 인해 별도의 통장으로 일부 자부담금 집행, 카드 결제대금 연체 및 강사료 원천징수 미실시 등 지출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보조금 사업의 규정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 보조금 정산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보텀e 연계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함이 원칙임(서울특별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년 12월, 97면 참조).

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성과 보고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의 목표치가 비슷하게 설정되었다”고 지적하며,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속성으로 결과(outcome)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달성도를 의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⁹⁾

8) 보텀e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보조사업자가 공모,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금 포털 시스템임.

9)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4년 5월 29일, 88-90면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는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있어서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01.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 실국공통, 기획조정실(총괄), ... 자치경찰위원회]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통제절차의 일환이고,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함.

성과지표는 과거 실적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나 시민건강국, 경제정책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관리실, 도시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부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직전 회계연도의 기달성 성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달성 목표치를 설정함.

6)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2년	'23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및 보고 건수(건)	목표(건)	180	185
		실적(건)	341	281
		달성률(%)	189.4	151.9
자치경찰교육콘텐츠 개발편수 및 교육 실시 횟수	자치경찰 교육콘텐츠 개발편수 및 교육 실시 횟수(회)	목표(회)	20	22
		실적(회)	37	36
		달성률(%)	185.0	163.0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보고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22년 대비 '23년의 목표치가 비슷하게 설정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의 경우 '22년도 목표 180건 실적 건수가 341건수로 목표달성률이 189.4%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목표 건수를 전년 실적의 54%인 185건을 설정하여 목표치 자체 설정이 낮다고 판단됨.

자치경찰교육콘텐츠 개발 편수 및 교육 실시 경우에도 '22년도 목표 20건을 설정하여 37건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목표를 전년목표 건수보다 10% 증가한 22건을

설정하였음.

'23년도 목표 설정 건수는 전년도 실적 건수의 59% 수준이므로 목표설정을 낮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시정권고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2년도, '23년도 목표를 비슷하게 설정하여 목표달성 성과가 대부분 100% 이상 달성하는 등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다수 발견됨.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속성으로 결과(outcome)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달성도를 의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산정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년도 실적을 포함한 3개년 통계치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전 성과를 반영한 적극적 목표설정이 필요하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결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지표 역시 목표치를 전년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지표 설정이 필요해 보이며 무리하게 정량적 평가 지표를 고집하기보다 정성적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함.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